

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12. 1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2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2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2. 1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중 인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7846호, 2006. 1. 11공포·시행),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9566호, 2006. 6. 29공포, 2006. 7. 1시행)이 개정·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·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종로구 주민이 조례의 제·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/40 이상으로 한다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